

## ■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절차 ■

### 1. 신청 자격:

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 상 제1급, 2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

※ 65세 미만으로 「노인장기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
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

### 2. 서비스신청 제외대상

-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
-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, 운영되는 시설(개인 신고시설, 미신고시설)에 입소한 자를 포함
- ※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, 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,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(신청은 가능)
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
-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「치료감호법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
- ※ 다만,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. 그 밖의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
- 가사간병방문서비스
-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
- 노인돌봄서비스
-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

- 산모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기본급여는 이용가능(단, 동시간대에 중복지원 불가) 또한 출산에 따른 추가급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(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함)
- 직장 및 학교내에서 근로지원인,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,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(교내지원서비스 요청 확인후 가능)

### 3.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

-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함
- ※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. 2014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4년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자만 신청가능
- ※ 탈락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 확인(행복-e 시스템) 또는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등)로 확인
-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지 않음
-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되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,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산정
-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기존 활동지원(보조)수급자가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활동지원

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로 처리

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가 65세 도래에 따른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,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

#### 4. 신청의 종류

- 활동지원급여 신청
  - 신청 시기 :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.
- 갱신신청
  - 신청대상 :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- 신청시기 :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
  - 신청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- 등급변경신청
  - 신청대상 :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 - 신청시기 : 언제든지 신청가능
  - 신청서류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  - 가구유형(독거여부) 변화 : 주민등록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
  - 신체/정신 기능상태 변화 : 의사 소견서등 제출
- 수급자격유효기간
  -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. 단,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.
  -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.
  -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.

#### 5. 신청 방법

- 신청장소
  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  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신청자
  - 본인,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
  - 사회복지담당 공무원
  -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
- 신청방법
  - 방문, 우편, 팩스로 신청가능
  - 우편, 팩스 신청시 "시·군·구(읍·면·동)" 또는 "지사"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

## 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복지관 이용 안내 ■

### 1.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

○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

구 분	세 부 내 용
신체활동 지원	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	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
	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	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가사활동 지원	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 정리 등
	세탁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	취사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사회활동 지원	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	외출시 동행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그 밖의 제공서비스	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
\* 가사활동지원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(단,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
### 2. 활동지원급여의 제공

□ 급여 제공계획 수립

#### 1 기본방향

○ 본인의 희망,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수급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 수립

#### 2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

-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
-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

### 3] 급여 제공계획서 작성

- 필요영역, 목표, 급여 종류·내용·비용, 제공기간, 제공시간, 총비용, 본인부담금,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
  - 총비용,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안내,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급여 일정표를 포함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(별지 제23호서식)를 작성
    - \* 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 제공 일정표(별지 제24호서식)

## 3. 급여 이용(제공) 계약 체결

### 1] 정의

-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과 급여 내용,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

### 2] 계약 당사자

- 활동지원기관과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(보호자)

### 3] 계약 주요내용

-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사항이 포함 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(별지 제25호서식)을 체결하여야 함
  - 계약 당사자
  - 계약기간
  - 활동지원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
  - 비급여 대상서비스 내용 및 비용
  - 손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
  -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

### 4] 계약 절차

-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사본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사본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또는 공단에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
-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
  - 수급자 본인여부
  - 수급자격
  - 활동지원등급

-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
  -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
  -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방법
- 활동지원기관과 수급자의 계약서 작성
  - 활동지원기관은 계약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 제공
    -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
    - 공단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다시 발급할 때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및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발급하여야 함
  - 수급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(별지 제26호서식) 제출
  - 계약 체결시 수급자·가족과 활동보조인·활동지원기관간에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(별지 제27호서식) 작성
  -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,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함

## ■ 활동보조서비스 보조인 이용 안내 ■

### ○ 활동보조인 자격

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- 활동보조인 신청자는 신청서와 교육이수증,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
-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,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음

- 활동지원 수급자
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- 노인장기요양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-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-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

구 분	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
(1)배우자	남편, 아내
(2)직계혈족	할아버지, 외할아버지, 할머니, 외할머니 아버지, 어머니, 아들, 딸, 손자, 손녀
(3)형제·자매	오빠, 형, 언니, 남동생, 여동생
(4)직계혈족의 배우자	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녀사위
(5)직계혈족의 형제·자매	할아버지의 형제·자매 : 큰할아버지, 작은할아버지, 대고모 아버지의 형제·자매 : 큰아버지, 작은아버지, 고모 어머니의 형제·자매 : 이모, 외삼촌 등
(6)배우자의 직계혈족	시어머니, 시아버지, 장인, 장모
(7)배우자의 형제·자매	남편의 형제·자매: 시숙(위, 아래), 시누이(위, 아래) 아내의 형제·자매: 처남(위, 아래), 처형, 처제

\*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참조

\* 장애인서비스과-1024('13.5.22)호 '201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(지침) 중 일부개정 통보'에 의한 (7)배우자의 형제·자매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은 '14.2.28까지만 유효

### ○ 활동보조인 모집

-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: 교육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(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)
-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: 교육 희망자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

### ○ 활동지원인력 활동시 유의사항

- 성별·연령·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안 됨.

-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
- 허위결제 등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다음과 같은 위법·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, 부당 지급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(원인행위자),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 재지정 금지,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상실 및 1년간 자격취득을 제한
-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
-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
-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
- 수급자를 소개·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
-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의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(지각·조기종료 금지)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동의 없이 명시된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.
- 실시간으로 결제하되, ARS결제, 소급결제, 예외결제 등의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원칙을 준수